

감정평가서

의뢰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황승환

건명 : 김승희 소유물건
(2025타경9730)

번호 : 제025042401호



(주)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미로37길 36, 5층 (양재동, 준인빌딩)

TEL. (02)752-0677

FAX. (02)775-2976

(부동산)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안 평

(주)은누리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박희백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억사천일백만원정(₩341,000,0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황승환	감정평가 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승희 (2025타경973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 04. 30	2025. 04. 30	2025. 04. 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341,000,000
		< 이 하 여 백 >			
합계					₩341,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대상물건의 평가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영등포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메이슨리치 제7층 제701호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4)		
이용상황	업무시설	사용승인일자	2020.05.2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 : 2층, 지상 : 13층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기타	-

기호	구분	전유부분 (㎡)	공용부분 (㎡)	대지지분 (㎡)	비고
1	제7층 제701호	29.35	15.87	8.3	업무시설 (오피스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4월 30일로 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1) 실지조사 실시기간

실지조사기간은 2025년 04월 30일 임.

(2) 조사 내용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등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시장가치라 함은 평가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타

(1) 지번, 면적, 호수 등은 귀 제시 목록 등에 의거하였음.

(2) 본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바, 외형조사와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통상적인 내부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3)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거래관행상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거래 및 분양되고 있는 바,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4) 토지·건물 배분 가격은 법원감정실무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에 의거 배분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주된 방법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구분건물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은 ① 1동 전체의 가격을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한 후 대상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원가법, ② 수익성부동산의 구분소유권 평가시 대상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한 이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대상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3) 일괄. 구분. 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주된 방법에 따른 산출내역(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의 선택

(가)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번	건물명, 동, 층, 호	용도	전유면적 (㎡)	거래금액(원) (단가(원/㎡))	거래시점
#1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2층 제201호	오피스텔	29.24	339,000,000 (11,593,707)	2022.11.23
#2	영등포동7가 94-328	한가람 더원 제1동 제3층 제306호	오피스텔	25.51	231,000,000 (9,055,272)	2024.07.30
#3	영등포동7가 94-52	루브르씨티 제5층 제507호	오피스텔	21.01	240,000,000 (11,423,132)	2022.08.29
#4	영등포동7가 94-298	리첸스타 오피스텔 제5층 제501호	오피스텔	19.3	180,500,000 (9,352,332)	2023.11.16

(나) 사례의 선택

본건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로 유사 면적, 구조 사례로 동일 건물의 동일라인 동일 면적 거래사례인 <사례 #1>를 선택함.

* 선택 거래사례의 단가 = 339,000,000 / 29.24 ≒ 11,593,707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3) 시점수정

(가)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나) 한국부동산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 오피스텔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구분	2022년 10월	2025년 03월
서울 강남지역 서남권	102.67	99.93

(다) 결 정

대상의 시점수정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요지역별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 강남지역 서남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라) 시점수정치 산정

구분	매매가격지수	비고
사례의 거래시점 지수	102.67	2022년 10월 적용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지수	99.93	2025년 03월 적용
시점수정치	0.9733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조 건	항 목	비 교 치		비 고
		본건	사례#4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1.00	대등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1.00	대등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3	1.00	본건은 사례대비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 에서 우세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비교치	누계	1.030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주된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주된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사례단가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x 면적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 (㎡)	시산가액 (원)	비고
1	11,593,707	1.000	0.97331	1.030	29.35	341,129,153	-

(2)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

대상 물건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원가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대상물건의 성격상 수익환원법의 적용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방법을 결정하였음.

(3) 시산가액 조정 관련사항

1) 시산가액의 조정의 개념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시산가액에 대상물건의 특성 및 평가 목적, 자료 분석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함.

2) 각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거래사례비교법 (원)	다른 감정평가방법 기준단가(원)	비 고
1	341,00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가격자료 및 합리성 검토

(가) 평가전례

[출처 : KAPA-HUB]

기 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	전유 면적 (㎡)	기준시점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사용승인	평가 목적
#5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2층 제204호	29.22	2024.09.25	329,000,000	11,259,411	2020.05.21	경매
#6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3층 제301호	29.35	2024.07.22	337,000,000	11,482,112	2020.05.21	경매
#7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3층 제305호	29.35	2024.07.15	330,000,000	11,243,612	2020.05.21	경매
#8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6층 제604호	29.22	2024.06.17	335,000,000	11,464,750	2020.05.21	경매

1) 시산가액 결정의견

본건은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6조에 의거 구분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기준 시산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참고가격 자료

1. 가격수준

가격수준	본건 인근에 동류형의 부동산의 가격 수준은 전유면적 m ² 당 10,000,000 ~ 12,000,000m ² 내외 수준으로 탐문 조사되었음.
------	---

※ 내부수리상태에 따라 가격형성이 다소 편차가 있으니 참조바람.

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감정평가액 결정

1. 결정의견

본건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상기 참고가격 자료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등)에 의하여 지지되므로, 비준가액을 중심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2. 감정평가액 결정 : 341,000,000원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냉난방설비등 주요설비 및 기타설비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 상황	5. 토지형태 및 이용상태 및 인접도로	8. 임대 관계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6.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공법상 제한상태	9. 기타 참고사항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영등포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지하철역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여, 이용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중 제7층 제7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4. 냉난방설비등 주요설비 및 기타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5. 토지형태 및 이용상태 및 인접도로

인접필지 대비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6.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공법상 제한상태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냉난방설비등 주요설비 및 기타설비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 상황	5. 토지형태 및 이용상태 및 인접도로	8. 임대 관계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6.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공법상 제한상태	9. 기타 참고사항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 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임.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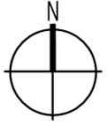
8. 임대 관계

-

9.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바, 외형조사와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통상적인 내부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경매 진행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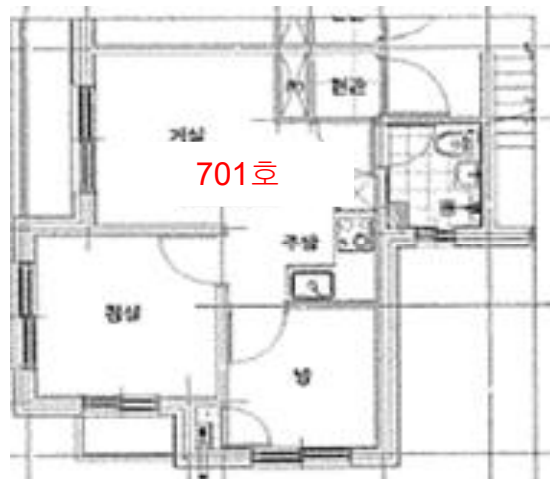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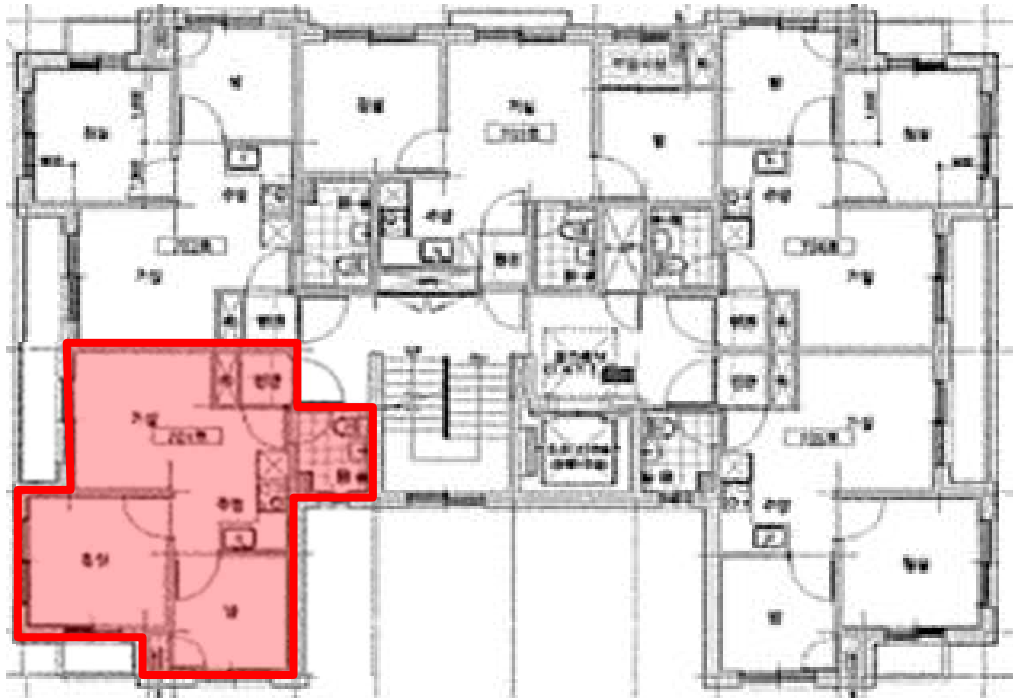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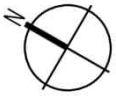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7층 제701호



건물개황도



※본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바, 외형조사와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통상적인 내부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사 진 용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01.본건 전경]



[02.본건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03.주출입구 전경]



[04.현관전경]